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84호

신항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광진구 중곡동 18-24번지 일대 신항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22일
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추진단계	비고 (최초결정고시)
신항빌라 재건축 정비구역	광진구 중곡동 18-24번지 일대	15,757.8	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(고시일 : 2022.6.2.)	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40호 (2022.6.2.)

나. 해제기한 연장 : 2027. 6. 2.까지(2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4)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(☎02-450-970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